



건강데이터 활용과 보험상품 개발

김석영 연구위원, 손민숙 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신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함. 일본의 JMDC(Japan Medical Data Center)는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있음. 우리나라도 제2의 석유라는 빅데이터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이 활발히 개발되길 기대함

■ 보험은 사고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한 위험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통계의 집적이 필수적임

- 보험산업은 대수의 법칙을 근간으로 장래에 발생할 사고의 확률을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상품을 개발함
- 정확한 위험률 계산을 위하여 보험회사는 회사 경험통계를 포함한 관련 통계를 집적함

■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의 보장 위험에 대한 경험 통계가 부족할 때 일본 등 해외 통계와 국민통계를 사용하였으며 경험통계가 축적된 이후에는 회사의 경험통계를 사용하고 있음

- 보험산업의 초창기에는 경험자료가 전무하여 일본의 위험률과 통계자료 및 국민사망통계 등을 활용하여 사망률, 입원율, 암발생률 등을 산출
 - 과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 국내 의료 관련 통계를 구하기 어려워 해외의 유사한 통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보정하여 사용
- 생명보험회사는 상품판매를 통하여 경험통계를 축적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험요율 산출 시작
-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때에는 여전히 경험통계가 없어 해외통계에 의존함으로써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7월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함으로써 보험회

사는 보건의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신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에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
 -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¹⁾
-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보험회사는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개발이 용이해졌음
 - 실제로 최근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동안 보장하지 못했던 위험보장(예를 들어, 중기간질환, 중기폐질환, 중기심질환)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

■ 일본의료데이터센터(JMDC: Japan Medical Data Center)²⁾는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있음

- 일본 보험회사는 JMDC의 건강정보를 활용해 건강나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상품을 판매함
 - 소비자의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강나이보험료 산출방식은 정부, 보험회사,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됨³⁾

■ 우리나라도 제2의 석유라는 빅데이터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이 활발히 개발되기를 기대함

-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상존
 -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음⁴⁾
-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에 의료 관련 빅데이터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설립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른 나라의 통계를 활용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더 적합한 위험률 산출이 가능해질 것임 **kiRi**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2) JMDC는 일본 건강보험조합, 병원 등으로부터 비식별화된 건강검진데이터, 진료보수명세서 등을 받아서 분석, 가공하여 보험자(건강보험조합, 보험회사 등)에게 데이터분석 서비스를 제공함

3) 김석영(2017. 4. 17), 「헬스케어서비스와 건강나이 도입」, 『KiRi 리포트』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